

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: 2026. 8. 13.

제출자: 송파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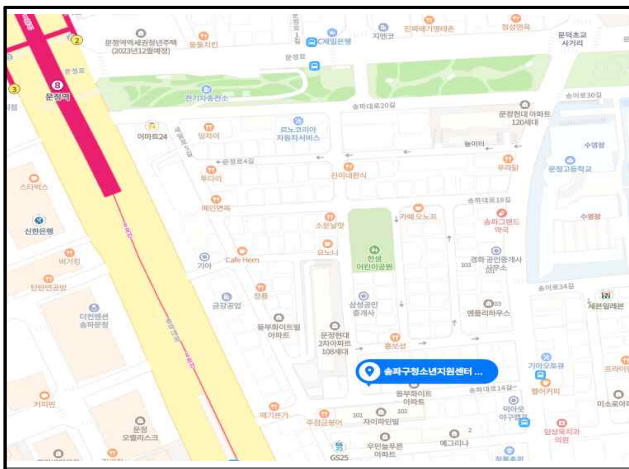
1. 제안이유

“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”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: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
- 위치: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4길 7 (문정동)
- 규모: 지하1층, 지상2~4층 [건물 연면적 627.59㎡, 대지 251.5㎡]
- 운영인력: 7명(센터장1, 팀장1, 팀원5)
- 시설 및 위치도



위치도



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: 2027. 1. 1. ~ 2031.12.31.(5년)

※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4항

- 위탁사무

-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시설 운영,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
-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, 학업 복귀 지원, 심리·정서 지원
-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·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, 역량 개발, 진로·직업 탐색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·자립 지원

- 민간위탁 필요성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업, 심리·정서, 행동·발달, 자립 등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임.
-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

-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

- 2026년 운영보조금: 340,929천원 (국비 113,643, 시비 113,643, 구비 113,643)

다. 향후 계획

- 2026. 9.~10.: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
- 2026.10.~11.: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
- 2026.10.~11.: 수탁기관 선정결과 구의회 상임위 서면보고
- 2026.11. : 위·수탁 계약 체결

라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: 원안채택('26. 8. 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예산관리

- 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(지방비 부담 의무)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고보조사업 지원단가에 따른 지방비 확보

관 련 규 정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 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 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, 지정기간, 지정절차,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·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·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
2. 사업계획서
3. 시설 명세서
4. 전문인력 보유 현황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 <개정 2025.11.18.>

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)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및 조례·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